

훈련위탁계약서

본 계약의 “ ”(이하 “갑”)와 “(주)씨에프오아카데미” (이하 “을”)은 “갑”의 직업능력훈련에 대한 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범위) “갑”이 위탁한 직업능력 훈련과정 및 수행계약을 위한 다음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한다.

훈련과정명	훈련일정	훈련일수	훈련시간	1인당 훈련비
		일간	시간	
참여기업 고용보험관리번호	참여기업 교육담당자 성명/직함	교육담당자 직통번호		

제2조 (계약기간 및 인원)

- 가. 계약기간은 훈련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훈련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한다.
나. 위탁계약 인원에 대한 훈련생은 “갑”이 “을”에게 제출한 훈련생명단을 “을”이 훈련개시일 까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 보고한 훈련생으로 본다.

제3조 (정부지원금 지급)

- 가.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은 “2형[실제훈련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 납부 후 수료 시 정부지원금 지급]으로 한다.
나. “갑”은 교육비를 입금하고 30일 이내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내 사업주계좌등록을 진행하여야 한다.※필수
다. 정부지원금의 지급일자는 해당 훈련 개시 월까지 입금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익월 30일로 하며, 개시 월 이후 입금기업은 입금월의 익월월 초 산업인력공단에 입력된 계좌정보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라. “갑”이 고용보험체납, 지원한도 초과, 훈련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사업주계좌 미등록, 정부지원금 지급에 대한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 정부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제4조 (훈련 진행에 관한 사항) “갑”은 “을”이 정하는 훈련시간에 위탁훈련생들이 성실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을”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수료) “을”은 훈련과정 인정상의 훈련수료기준(훈련시간의 80%이상 출석)을 통과한 훈련생에 대해서 수료 처리 및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6조 (성실의무)

-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내용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실시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될시 “을”이 책임을 진다.

제7조 (개인정보동의) 계약서상의 훈련생 개인정보 및 교육 관련 정보는 교육의 실시신고, 출결관리, 환급금 및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에 제공됨을 동의한다.

제8조 (비밀유지)

-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이외의 용도에 이용하지 못한다.
나. 상기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한다.

제9조 (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상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회 사 명
대표자직인

[을]
훈련기관명 (주)씨에프오아카데미
대표자 직인 전 병 문



2024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	직위	핸드폰번호	e-mail	서명